

	<b>대학구조조정위원회규정</b>	문서번호 제정일자 최종개정일자 담당부서	MSU- 2012. 3. 12. 기획산학처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 구조조정 규정에 의거하여 대학구조조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구조조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성)** ①위원회는 기획산학처장, 교무입학처장, 교육혁신처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며,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.

③위원회에 간사를 두되,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
**제3조(임기)**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결월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**제4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대학구조조정에 관한 사항
2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**제5조(회의)**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6조(행정지원)** ①위원회의 행정지원은 기획산학처에서 담당한다.

②위원장은 관계 부서 및 관련 위원회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.

**제7조(보고)**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세부사항)**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## 부 칙

1. 이 규정은 2012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.